법령 제명 약칭법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60 발의연월일: 2025. 1. 31.

발 의 자:이해식·김문수·김교흥

박상혁 • 채현일 • 허성무

한민수 · 정준호 · 양부남

이연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 중 가장 긴 법률명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로 무려 80자가 넘음.

이처럼 법제명이 길거나, 길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령명 전체를 기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로 약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언론 기사, 법원의 판결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정부기관에서도 동일 법제명에 대해 각기 다른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기준 없는 약칭 사용으로 국민들이 정확한 법제명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오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등 법 인 식 혼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령 제명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령 제명이 9음절 이상이거나 관형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령 제명의 약칭을 하도록 하되, 법령 제명의 약칭으로 인하여 해당 법령의 목적 또는 내용의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법령 제명의 약칭은 대표적인 단어 위주로 정하되 다른 법령과 혼동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단어로 정하고, 조사·접속사나 문장부호 등은 가능한 한 생략하고 명사형으로 하는 등 약칭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법령 제명의 약칭은 법령 제명의 우측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법 령 제명의 약칭을 기재하고, 그 외에 별도로 "(법령 제명의 약칭)" 이라는 제목의 조를 두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서 법 령 제명의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며, 개별 법령 조문에서 법령 제명의 약칭을 인용하 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제명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5 조).

법령 제명 약칭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제명의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령 제명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 제명의 약칭대상) 법령 제명이 9음절 이상이거나 관형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령 제명의 약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제명의 약칭으로 인하여 해당 법령의 목적 또 는 내용의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법령 제명의 약칭기준) 법령 제명의 약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 1. 대표적인 단어 위주로 정하되, 다른 법령과 혼동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단어로 정할 것
 - 2. 조사·접속사나 문장부호 등은 가능한 한 생략하고 명사형으로 할 것
 - 3. 해당 법령의 목적 또는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줄일 것
- 제4조(법령 제명의 약칭방법) 법령 제명의 약칭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으로 한다.

- 1. 법령 제명의 우측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법령 제명의 약칭을 기재할 것
- 2. 제1호에 따른 약칭 기재 외에 별도로 "(법령 제명의 약칭)"이라는 제목의 조를 둘 것
- 제5조(법령 제명의 약칭 사용 등)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서 법령 제명의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약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다른 법령 조문에서 법령 제명의 약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제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제명의 약칭에 관한 적용례)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부터 적용한다.